

의안
번호

557

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

검 토 보 고 서

보건복지위원회

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2026. 2. 25.

전문위원 한 미 경

1. 제안경위

- 가. 제 출 자 : 성북구청장
- 나. 의안번호 : 제557호
- 다. 제출일자 : 2026. 2. 3.
- 라. 회부일자 : 2026. 2. 11.

2. 제안이유

- 가. 2025년 제12기 성북구 어린이·청소년 의회 제안 안건 채택
- 나. 관내 청소년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생애 첫 주민등록증 발급 시 축하 및 청소년 맞춤형 정보 전달을 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기존의 제6조제6호의 성년의 달을 삭제하고 축하카드 발송 등 지원을 구체화하여 “성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청소년이 주민등록증 최초 발급 시 1만원의 범위 내 청소년 축하카드·기념품 등 지급”으로 신설함(안 제6조제7호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해당 없음

나. 예산조치 : 2026년도 본예산 반영(구비15,000천원)

다. 입법예고

○ 기 간 : 2025. 12. 26. ~ 2026. 1. 15. (20일)

○ 의 견 : 의견 없음.

5. 검토의견

□ 개요

- 본 개정안은 '2025년 제12기 성북구 어린이·청소년 의회'에서 제안한 안건을 채택한 것으로, 현행 조례 제6조(지원사업)제6호 일부 내용을 삭제하거나 구체화하여,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청소년들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임

□ 주요내용

- 안 제6조(지원사업) 정비
 - 기존 '청소년의 달 지원'을 '청소년의 달 행사 지원'으로 내용 구체화
 - 기존 축하카드 발송 지원 사업은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전산자료 제공 불승인으로 카드발송이 불가하여 사업이 취소됨에 따라
 - '축하카드 발송 등 지원'을 삭제하고 개정안 제6조제7호에 '성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청소년이 주민등록증 최초 발급 시 1만원의 범위 내 청소년 축하카드·기념품 등 지급' 문구를 추가하여 지원 내용 구체화

<신·구조문대비표>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지원사업) 구청장은 청소년의 문화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	제6조(지원사업) ----- -----.
1. ~ 5. (생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
6. 청소년의 달, <u>성년의 달 행사</u> 및 축하카드 발송 등 지원	6. 청소년의 달 행사 지원
<신 설>	7. 성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청소년이 주민등록증 최초 발급 시 1만원의 범위 내 청소년 축하카드·기념품 등 지급
7. (생략)	8. (현행 제7호와 같음)

□ 종합의견

- '2025년 제12기 어린이·청소년 의회'의 정책 제안을 적극 반영하여, 주민등록증 최초 발급 시 1만원 범위 내의 기념품을 지급하는 실질적인 지원 근거를 신설하였고,
- 행정안전부의 전산자료 불승인으로 인해 집행이 불가능했던 기존의 '축하카드 우편 발송' 조항을 삭제하여,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정비함으로써
- 청소년들에게 체감 가능한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며, 상위법령 위반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